

“정부는 교회에 대한 감시, 무시, 탄압 멈춰야”

언론협회 ‘제18회 기독교언론포럼’, 정부의 예배제재 비판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예배제재가 매우 불합리하다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회장 문병원 국장은 지난 11월 30일(월)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8회 기독교언론포럼을 열고,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의 무분별한 대응이 종교자유를 명백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와 한국교회의 대응·예배회복의 긴급성’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김남식 박사(한국장로교사회 회장), 임성택 박사(KC대학 전 총장), 이일호 박사(살롱나비 사무총장), 김준오 목사(교회연합신문 발행인) 등이 발제자로 나서, 예배와 관련한 사건 및 전망에 대해 전문가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날 예배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형원 장로의 사회, 윤관식 장로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문병원 회장의 인사말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먼저 인사를 전한 회장 문병원 국장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다. 이는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의 특권으로 어떤 법률이나 권력이 기독교인들로부터 이 특권을 빼앗을 수 없다”며 “정부는 방역을 방치해 교회 예배를 일방적으로 금지시켰다. 한국교회의 예배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김남식 박사 “교회 침체 극복 위해 예배 회복해야” 한국교회 예배회복의 긴급성이란 주제로 기초 강연을 펼친 김남식 박사는 먼저 예배의 근본적 이해를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게 놓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계시에 근거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로 보는 것이다”며 “기독교 예배는 계시 의존적 관계에 있으며, 그 중심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선취 행위에 대한 응답과 감사로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적인 행위가 수반된다”며 “예배는 인간의 참여와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섬기의 열정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런 전제에서 한국교회의 침체를 회복키 위해 반드시 예배부터 회복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한국교회는 최근 통계에서 꾸준히 성도 수가 감소하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로 감소세가 더 커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이를 극복키 위해 바른 예배의 회복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임성택 박사 “온라인교회 고착화,성경적 교회 붕괴” 임성택 박사는 코로나 시대 속 대체로 자리잡은



비대면 예배와 온라인교회 고착화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다. 임 박사는 먼저 비대면 예배를 정당화하는 주장들에 대해 무지의 오류라며 “예배는 ‘공간’이 아닌 ‘모임’을 지칭하며,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 모임의 질점이 예전적 예배”고 정의했다.

하나 성도들의 걱정을 염려하는 코로나 방역의 순수성을 결코 부정할 수는 없다는 객관적인 입장에 보였다. 임 박사는 “이는 교리적 논쟁이 아닌 매우 신실적이고 보편적 논쟁이며, 현실적으로 매우 정당한 방역 전문가의 주장이다”며 “사회는 결사적으로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반면, 교회는 방역당국의 순수한 간청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후에 교회의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회는 사회에 대면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신앙적 이유를 간절히 설명했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 시기에 자칫 비대면 예배가 정당화 되어, 온라인교회화 고착화될 수 있지 않느냐는 강력한 우려도 제기했다. 먼저 임 박사는 “비대면 예배가 성경적, 신학적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이 확립되는 순간부터 대면예배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며 “허나 분명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주장에 동조하는 교회와 신학자들 같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온라인에 기반한 초대형교회의 등장도 예고했다. 임 박사는 “기반시설이 미약한 힘 많은 작은 교회들의 붕괴로 흡인, 그리고 스스로 비대면 예배를 택한 무적 교인들을 끌어 모은 초대형교회의 등장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무적 교인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몇 안되는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초대형교회로 성장키 위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회와 예배의 개념조차 간단히 바뀐 것이고, 교회는 마침내 붕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일호 박사 “종교 전체에 대한 행정명령, 미치 조

선총독부의 포고령” 김준오 목사 “정부 유독 기독교에 대한 감시 강화, 종교 갈등 야기”

정부의 과도한 방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일호 박사와 김준오 목사가 연이어 발제를 진행했다. 특히 이 박사는 사랑제일교회 1개체가 일으킨 물의를 개신교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했으며, 신천지 확산 사태 당시 종교 전체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을 두고도 “조선총독부 포고령 같은 협박의 무게를 더한다”며 비난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준오 목사도 “정부는 유독 기독교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우리 사회는 다종교 사회로, 정부가 어느 한쪽을 두둔하거나 또는 차별화하는 모습이 드러나면 곧바로 종교 갈등이 생겨난다”고 동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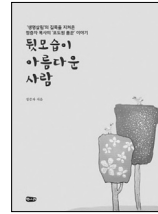
여기에 “한국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독교에 대한 탄압적 ‘방역정치’가 개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따지 교회를 코로나의 근원지로 몰아 일방적으로 ‘해배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아나기를 보기 위해 교회를 감시하는 행위는 교회를 무시하고 탄압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 외에도 이일호 박사는 정부와 대화를 하는 일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포퓰리즘적 접근을 하는 것은 역사적, 국가적 위기를 직면한 현 시점에 성경적 자세라 보기 어렵다”며 “방역정치로 국민의 기본권, 신앙과 양심의 자유, 헌법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는 추상같은 호령으로 외치는 선지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공동

신간 안내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이 책은 의료인과 목회자로서 생애 대부분을 ‘생명살림’의 길목에서 보내온 정중자 목사의 자전적 신앙 에세이다. 1946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다. 십대 때부터 작가가 되는 꿈을 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표는 달랐다. 저자의 70년이라는 시간 속에는 6.25 전후 대한민국 시대상과 저자의 고단했던 결혼생활 그리고 목회여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하나님은 어린 정중자를 당산의 자녀로 부르셨고, 간호사와 목사로 세우셨다. 그의 오늘은 말씀에 복종하며 인내와 눈물로 교회공동체를 섬겨온 낙타 무릎이 빛이낸 활자풍이다. 신앙이 인내 없이 꿈꾸는 허상이 아님을 자신의 치열했던 삶을 들춰며 조용한 어조로 들려준다. 정 목사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기를 소망한다.

저자 : 정중자 | 출판사 : 빛나래 | 227면 | 판매가 | 14,000원

키워드로 풀어가는 청년사역



2005년 첫 출간되어 청년사역의 길잡이 역할을 했던 《키워드로 풀어가는 청년사역》의 2020년 확대개정판이 출간되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비대면 사역의 필요성이 갑자기 앞당겨진 현실에서 청년사역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더욱 어려운 위치는 청년 현실과 청년 인구 감소, 청년이 부족하고 문화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지방 교회에서는 특히 청년사역의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 방법이 필요하다. 우선순위와 실행 방법이 없다면 청년사역의 구체적 각목에서 당황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청년사역에 큰 타격을 안겼다. 안전을 추구하면서 청년사역을 안정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하는 어려운 과제 앞에서 앞으로는 청년사역자들에게 유용한 매뉴얼이 될 것이다.

저자 : 양형주 | 출판사 : 홍성사 | 발행일 : 2020-11-13 | (145*210)mm 240p | 판매가 : 13,000원

애들아, 아빠가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다



부모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헤아려주는 특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를 생생하게 깨달을 특권, 그리고 내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믿음을 내 언어로 자녀에게 전할 특권이 있다. 코로나 시대, 교회의 대면 예배도 멈춰 서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이때야말로 진정한 가정 교육과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절호의 기회다. 자녀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어차피 교회학교 1시간으로는 부족하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잘 것’을 준비해야 한다. 부모가 건강하고 신실하게 준비해야 자녀에게 건강한 영적 양식을 먹여 키우며 든든한 믿음의 유산을 전할 수 있다.

저자 : 이무현, 칼리 늘샘 권자민 | 출판사 : 규장 | 발행일 : 2020-11-30 | (132*210)mm 256p | 판매가 : 14,000원

2021 예배와 설교 핸드북



1. 목회자가 알아야 할 2020년의 회고와 2021년의 전망 2. 본서의 자랑거리인 2021년도 예배 자료 - 예배로 부름, 예배 기원, 이 주일의 찬송, 성서 교육, 고백의 기도, 사탄의 확산 수록 3. 예배를 위한 지침 - 예배 우등생이 되고 싶다. 4. 바른 설교 사역을 위한 지침 - 설교자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勸勉)의 항목들 5. 52주당 예배 설교 지침 - 성서절과에 따른 설교의 핵심에 대한 형태 제시 - 본문 접근(본문의 재장점, 본문 개관, 본문 - 분석, 본문의 신학), 평행 본문, 설교를 위한 적용(오늘에 적용, 설교 개요, 설교를 위한 예화) - 다양한 설교 형태 제시 - 대지, 이야기, 전개식, 이야기식, 네 페이지, 분석, 귀납적, 강해 설교 ... & 매주일 영상 예배 자료 제공 - 파워포인트로 작업된 영상 예배 자료를 ‘예배와 설교 아카이브 홈페이지 (www.wpa.or.kr)’를 통해 제공

저자 : 정중복 외 2인 | 출판사 : 예배와설교아카데미 | 발행일 : 2020-11-10 | (152*225)mm 836p | 판매가 : 39,800원

긴급진단

이은경 변호사 //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포괄적 차별금지법, 과연 차별시정이 가능한가? ④

‘정의당’은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고 하고,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성향을 포함한다”고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별”을 새로 정의하는 것은 무척 놀라운 일이고, 남성과 여성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또는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란 개념의 모호성도 큰 문제다. 그런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정의의 유사성이 나타내듯이 “감정적, 호의적, 이끌림, 개인적 가능성, 인식 혹은 표현, 인지 등”은 모두 주관적, 내면적, 불확정적인 개념이다. 첫째, 주관적인 개인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법의 적용이 모호해지는 차별적 약점이 있다. 둘째, 개념이 포섭하는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감정적·호의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는 관계도 “성적지향”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성 친구와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조차도 “동성애적 성적지향”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긴다. 또한, 분류할 수 없는 성 또는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도대체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법은 명확해야 한다.

이렇듯, 차별사유 중 포괄적 특성을 가지는 ‘객관적 표지’를 갖추지 못한 것들은 손쉽게 약용될 수 있다. “성별” 중 ‘제3의 성’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은 개념 자체로 명확하지 않고,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자료를 통해 판단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 적용을 받기 위해 성소수자 등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그렇지 않나? 현실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사례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 등에 대한 비난이 암암리에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숨겨져 있는 것이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전혀 영감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성소수자 등이라고 거짓말하고

용, 배지, 승진 등에서 차별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사 용자는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의 진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득불 우대부터 할 수밖에 없는 어이 없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다. 이는 “성별” 중 ‘제3의 성’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대한 ‘구별표지의 모호성’에 기인하는 것이다.17)

사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틀리다”(it's wrong), “다르다”(it's different), “옳다”(it's right)로 나눌 수 있다.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표현의 자유(제21조)는 이를 “틀리다”(it's wrong)라고 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안은 중간 영역인 “다름”을 뛰어넘어 곧바로 “옳음”의 영역으로 이들을 옮겨 놓으려는 것이다. 이는 도덕적 비판, 종교적 논쟁의 시 도 자체를 “틀림”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도덕, 윤리, 종교의 영역까지 실정법으로 정의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인간사회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맞추어 뜯어 고쳐질 수 없다. 차별사유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로 ‘자기 생각에 맞추어 남의 생각을 뜯어 고쳐려는 행위,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횡포’를 초래하는 건 아닐까?

물론, ‘인권위’는 “이 법이 제정되면,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현하는 설교를 하거나 거처에서 전도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를 묻는 질문은 “종교적 일부에서 제기하는 그러한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권위’가 제시한 시안은 고용, 재화·용역 등의 일부 영역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정의당’이든 ‘인권위’이든 차별금지영역은 무척 광범위하고 규정도 예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같이 간단히 답변할 일이 아니다. 해외 입법례는 ‘종교단체, 교단,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나 봉사단체는 고용, 주거시설

의 매매 또는 임대, 회원 가입에 있어서 동일 종교로 제한을 할 수 있고, 동일 종교 또는 교단의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으며, 종교적 교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식의 차별금지외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정의당’과 ‘인권위’는 말로는 ‘설교나 전도를 차별하지 않는다.

격정 말라’고 하면서 실상은 기독교를 오로지 예배당에만 기댄다. 당사 종교선전(포교) 종교 교육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제20조)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종교기관이라도 성직자를 제외하고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고용을 배제할 수 없고, 해고 등도 불가능하다. 모든 종합학교나 신학교는 간학이념에 반하는 학생의 입학·편입을 제한할 것이고, 추후 전학과 퇴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이미 ‘인권위’는 다지성에 관한 강연 강의를 대관 거부에 관한 한동대 케이스, 동성애 홍보 현수막 게시 및 동성애 영화제 장소 대관의 불허에 관한 숭실대 케이스에서 모두 시정권고를 했다. 모든 종교들을 동등한 전리로 간주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인권의 포교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선생의 권고는 그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제소되고, 학교에서의 신우회 활동에 대한 교사의 참여는 금지되고 있다.

“언어는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의 촉진 및 보급을 추진하는 법령(국어기본법 등)과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하고, “국적”은 헌법이 외국인을 대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전제하에 ‘이행규칙’을 극복해야 할 것이므로, 과연 차별사유로 볼 수 있는지 토론해야 한다.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이 혼인, 혈연, 입양을 토대로 한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 외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인 ‘가구’도 포함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다. 동거커플이 가족과 동일하게 보호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 할 수 없지 않은가? 특히 “고용형태”는 ‘정의당’과 ‘인권위’ 모두 비

정규직 차별이 만연한 사회 현실을 고려할 때 별도의 사유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추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조약과 해외 입법례 그 어느 곳에서도 “고용형태”란 차별항목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의당’은 “고용형태”란 ‘직업의 종류를 구분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근로와 단시간 근로, 기간제근로, 파견근로, 그 밖에 통상근로 이외의 근로형태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모집·채용, 임금, 교육·훈련 배치, 승진, 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이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시정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의 시정, 법령 및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차별예방 등 차별시정 의무가 있고 ‘인권위안’은 재판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 보호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다. 정부의 5년 단위 차별시정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 지자체장, 시·도교육감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는 ‘하여야 한다’로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인권위’의 개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은 ‘인권위’의 권고안을 존중하여 수립하고, 차별금지법에 반하는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 시정도 ‘인권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인권위’는 시행계획의 이행결과 제출 요구권도 있다. 법률기관에 불과한 ‘인권위’를 헌법기관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최상위 국가기구로 격상해 준 것이다. 그런데, ‘인권위’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③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행정·사업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 4가지로 항목을 나누어 ‘차별영역’을 규율하고

있다. 모집·채용, 임금·급료 지급, 교육·훈련 배치, 승진, 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대표적 행위를 규정하고,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용, 교통수단 및 서비스 공급·이용, 상업·공공시설, 토지·주거시설, 보건의료서비스, 공공·이용 등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발생 가능한 행위를 명시했다고 한다. 한편,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에서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등 차별행위를, 행정·사업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에서 잠정권 행사 및 행정절차·서비스 이용, 수사·재판 절차·서비스에서의 동등대우를 각각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차별금지 행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야말로 국민의 생활영역 거의 전부를 ‘차별영역’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다. 금지로 못 박은 차별행위들이 대부분 시민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다. 계약의 자유를 비롯한 사적자치의 원칙이 대폭 후퇴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론화’를 심층적으로 해야 한다. ‘고용’ 영역은 근로기준법이 상시 5인 미만인 근무하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해고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업장의 해고를 제한한다. 정당이나 종교단체 같이 특정의 사상·이념이나 신앙을 공유·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향사업”의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 ‘정의당’은 ‘차별기부금 기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물론, 심지어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정당’의 운영까지 ‘차별영역’으로 본다. 시설물의 접근·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은 “종교시설의 신전지 등 이단종파 출입허용 여부”, “생활학적 남성의 여성전용시설(정실 포함) 사용여부” 등 현실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낳고 방송 등 서비스 제공·이용의 차별금지지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인론이나 방송사들이 이단종파, 타 종교 등을 옹호하는 광고 게재 등을 거절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